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40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장종태·박홍배·이건태

박용갑 • 이재관 • 박해철

조계원 · 문금주 · 최민희

허성무ㆍ이재강ㆍ김 윤

채현일 • 박희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그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 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평가에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고, 최근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기술지원, 인증 및 정기조사 등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할 수 있다.
- ⑤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의 제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등)"을 "(교육훈련 수료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 조사 ·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 제 제기에 따른 조사 · 평가를 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 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 야 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⑨·⑩ (생 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 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8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 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 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 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 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 ④ (생 략) <신 설>

제48조의3<u>(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u> 제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2
<u>기술지원, 인증 및 정기</u>
조사 등의 업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렁으로 정한다.
]48조의3 <u>(교육훈련 수료 여부에</u>

관한 조사·평가) ① ---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u>식</u> 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 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 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 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 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 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 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u>제48</u>
조제5항에	따른	교육	훈련	수료
여부				
<삭 제>				

③ (현행과 같음)